#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건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299 발의연월일: 2025. 3. 24.

발 의 자:윤건영·한병도·이광희

채현일 · 모경종 · 양부남

위성곤 • 이해식 • 박정현

신정훈 · 김성회 · 이상식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02년 불법 대선 자금 전달사건 이후 금권 선거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지구당이 폐지됨. 지난 20여 년간 시·도당이 지구당의역할을 맡았지만, 기초 단위인 국회의원 지역구 내 당원 활동의 법적근거가 보장되지 않아 당원을 조직하는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음.

현재 지역 정당 조직은 당원협의회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사무소 설치가 제한돼 당원 간 상시 교류가 어려운 상황임. 이로 인해 정당의 여론 수렴 기능이 약화 되고, 모든 상시적 정당 활동이 불가능 한 실정임. 더불어 원외 인사와 원내 현역 정치인과의 불평등 문제까 지 지적되고 있음.

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당원협의회를 폐지하고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지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50명 이상의 당원으로 지역당을 구성해

정당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정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3조등).

##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"시·도당(이하 "시·도당"이라 한다)"을 "시·도당(이하 "시·도당"이라 한다) 및 「공직선거법」 제25조에 따른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(이하 "지역당"이라 한다)"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"제18조(시·도당의 법정당원수)"를 "제18조(시·도당 및 지역당의 법정당원수)"로 한다.

제6조 중 "시·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"를 "시·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, 지역당의 경우에는 20명 이상의"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"(시·도당의 창당승인)"을 "(시·도당 및 지역당의 창당승인)"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"시·도당"을 "시·도당 및 지역당"으로 한다.

제18조의 제목 "(시·도당의 법정당원수)"를 "(시·도당 및 지역당의법정당원수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시·도당은 1천인 이상의"를 "시·도당은 1천명 이상의, 지역당은 50명 이상의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시·도당의 관할구역"을 "시·도당 및 지역당의 관할구역"으로 한다.

제37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5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벌칙에 관한 경과조치) 제5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구성) 정당은 수도에 소재	제3조(구성)
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・광역시	
·도에 각각 소재하는 <u>시·도</u>	<u>시·도</u>
<u>당(이하 "시·도당"이라 한다)</u>	당(이하 "시·도당"이라 한다)
으로 구성한다.	및 「공직선거법」 제25조에
	따른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
	하는 지역당(이하 "지역당"이라
	<u>한다)</u>
제4조(성립) ① (생 략)	제4조(성립) ① (현행과 같음)
②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(법	2
정시·도당수) 및 <u>제18조(시·</u>	<u>제</u> 18조(시 •
<u>도당의 법정당원수)</u> 의 요건을	도당 및 지역당의 법정당원수)
구비하여야 한다.	
제6조(발기인) 창당준비위원회는	제6조(발기인)
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	
의, <u>시·도당의 경우에는 100명</u>	<u>시·도당의 경우에는 100명</u>
<u>이상의</u> 발기인으로 구성한다.	이상의, 지역당의 경우에는 20
	<u>명 이상의</u>
제9조 <u>(시·도당의 창당승인)</u> <u>시·</u>	제9조(시・도당 및 지역당의 창
<u>도당</u> 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	<u>당승인)</u> <u>시·도당 및 지역당</u>
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	
있어야 한다.	
제18조( <u>시·도당의 법정당원수</u> )	제18조(시・도당 및 지역당의 법

- ①<u>시·도당은 1천인 이상의</u> 당 원을 가져야 한다.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 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<u>시·도당의 관할구역</u> 안 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.
- 제37조(활동의 자유) ① · ② 저 (생 략)
  - ③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·시·군, 읍·면·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수 있다. 다만, 누구든지 시·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수 없다.
- 제59조(허위등록신청죄 등) ① 다 경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1. · 2. (생략)
  - 3. 제37조(활동의 자유)제3항
     <삭 제>

    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·
     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

     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

	<u>정당원수</u> ) ① <u>시·도당은 1천</u>	명
	이상의, 지역당은 50명 이상	의
	·.	
	2	
	시·도당 및 지역당의	관
	할구역	
시	]37조(활동의 자유) ① ·	2
	(현행과 같음)	
	<u>&lt;</u> 삭 제>	

제59조(허위등록신청죄 등) ①	_
4 0 (=1 =1 -1 0)	

1.·2. (현행과 같음) <<u>삭</u> 제>

<u>둔 자</u>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